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

의 안 번 호	2223
--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2월 5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건물을 市 출연기관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이 전담 관리·운영함에 있어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의거, 사용료 면제를 추진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사용료 면제 공유재산 현황

- 소 재 지 :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210-1(고덕로 399)
- 사 용 자 :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
- 사용허가 면적 : 토지 1,387.9 m^2 , 건물 연면적 7,211.5 m^2
- 사용허가 기간 : 2021.3. ~ 2026.3. (5년)

나.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필요성

-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은 서울시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으로 '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' 운영은 서울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비영리사업에 해당하여 관련법령상 사용료 면제 요건을 충족
- 평생교육진흥원의 사용료 면제를 통해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 등 서울시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및 시민 학습권 제고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제1항제4호 및
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○ 2021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('21.1.12.)

- 심의근거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6조제2항제3호

- 심의결과 : 적정('21.1.15.)

※ 작성자 :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최홍주 (☎ 2133-3963)

관 련 법 령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24조(사용료의 감면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 4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·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제17조(사용료 감면)

-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“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 - 2의2.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